

高度成長期의 地方財政動向 —1960~70年代의 地方財政을 中心으로—

車 輢 權*

.....<目 次>.....

- I. 머리말
- II. 地方財政의 規模 推計
- III. 地方財政의 機能分析
- IV. 地方歲入源 分析
- V. 地方債의 活用
- VI. 地方財政制度의 改編과 政策課題

I. 머리말

지난 60年代와 70年代의 高度成長期에는 經濟各部門에서 현저한 量的 成長과 構造的 變化가 생겨 났으나 地方財政部門에 있어서도 政府支出의 상대적 比重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地方公共서비스의 構成이나, 地方財源調達의 構成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 같은 地方政府의 成長도 미스그레이브·로스토우(Musgrave/Rostow)의 所論에 따라 즉 經濟 및 社會發展의 각 段階에서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公共支出의 증대와 公共支出의 構成變化가 필요하게 된다는 「公共支出增大의 發展模型」에 따라 설명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政府部門의 成長은 經濟 및 社會發展의 中期段階를 향한 離陸(take-off)을 위하여 社會間接資本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公共投資의 증대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데 연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經濟發展의 中期段階에 있어서는 民間投資를 補完하기 위한 公共投資의 증대가 필요하며 모든 發展段階를 통하여 市場의 失敗에 대처하기 위한 政府介入과 規制가 확대될 수 밖에 없어 公共支出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그 構成도 현저하게 变화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¹⁾

한편 公共支出의 증대는 피콕·와이즈만(Peacock/Wiseman)에 의한 先驅的인 接近에 따라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本論文은 1983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임.

(1) R.A. Musgrave, *Fiscal System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9; W.W. Rostow, *Politics and the Stages of Grow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즉 「課稅의 許容水準」(tolerable level of taxation)과 같은 政府行動에 대한 制約條件과 「轉位效果」(displacement effect), 「點檢效果」(inspection effect) 그리고 「集權化過程」(concentration process)과 같은 假說에 따라 분석하여 볼 수도 있다.⁽²⁾ 피콕·와이즈만의 接近에 의하면 課稅가 政府支出에 대한 하나의 制約條件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平常時에는 소망스러운 公共支出水準과 소망스러운 課稅水準 간에 乖離가 있더라도 公共支出은 所得成長에 수반되는 稅收增加의 制約을 받아 점진적인 上昇傾向을 쫓게 된다. 그러나 戰爭이나 대규모의 災害와 같은 社會的 危機에 직면하게 되면 危機管理에 필요한 公共支出의 급격한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國民이 課稅水準의 引上을 용인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民間支出이 公共支出에 代置됨으로써 公共支出은 上方으로 轉位하게 된다(轉位效果). 이어 危機가 지나간 후에도 公共支出은 原狀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나 이는 社會的 危機가 촌속되는期間中 급격한 公共支出의 증대를 감당하기 위한 公共借入도 늘어 나고, 危機管理를 위한 政府活動範圍도 확대되지만(點檢效果), 危機가 종식된 후에도 課稅의 許容水準이 그 전 水準으로 복귀하지 않아 國債費나 政府서비스範圍의 확대에 따른 보다 높은 公共支出水準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끝으로 經濟成長過程에서는 公共서비스의 규일적인 標準화를 위한 公共支出의 규모와 성질 그리고 公共支出의 效率化에 대한 社會的 壓力を 받게 되어 公共經濟活動의 責任이 上級政府에 集中되는 현상이 생겨 나게 된다. 이는 上級政府일수록 유효한 統制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規模의 經濟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밖에 地方政府(地方公共支出)의 成長은 상술한 巨視經濟的 諸要因 이외에 中位投票者의所得變化나 公共서비스의 紿付에 사용되는 生產活動(서비스 紿付의 環境), 人口變化, 公共財의 質, 公共部門의 投入費用과 같은 微視經濟的 要因에도 의존하며 公共部門의 現실적인 支出水準은 상기한 巨視的 要因과 微視的 要因의 結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³⁾ 이 研究에서는 公共支出의 成長을 결정하는 要因으로서 微視經濟的 諸要因이 갖는 重要性을 인정하되 60年과 70年代의 高度成長이 60年代初부터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함으로써 「計劃的」으로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地方政府의 成長도 주로 巨視的 모델을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와 함께 本研究는 피콕·와이즈만의 古典的 研究에서 도출된 諸假說을 再檢討하여 보는 데에도 일부의 목적을 두고 있다. 研究內容은 (1) 地方財政의 規模推計 (2) 地方財政의 機能分析 (3) 地方歲入源 分析 (4) 地方債의 活用 (5) 地方財政制度의 改編과 政策課題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다.

(2) A.T. Peacock and J. Wiseman, "Determinants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Public Expenditure Analysis*, Balbir S. Sahni, ed., Rotterdam University Press, 1972, pp. 163-86.

(3) Charles V. Brown and Peter M. Jackson, *Public Sector Economics*, Martin Robertson, 1978, p. 87.

II. 地方財政의 規模 推計

1. 推計方法과 推計結果의 概要

현재 公表되고 있는 財政規模에 관한 統計는 歲出純計規模로 작성되고 있으나 地方財政은 1968年부터 그 規模를 표시하되 中央財政 및 他地方財政으로부터의 依存收入을 제외한 規模로 표시되고 있다.⁽⁴⁾ 그리하여 이 같이 작성된 財政規模에 관한 統計는 中央과 地方을 합한 總財政規模나 中央財政規模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地方財政의 總規模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地方財政은 1961年 10月 1日에 실시된 地方制度改革에 따라 서울特別市와 市・道・郡의 一般會計와 特別會計(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 그리고 教育費特別會計로 구 성되어 있으며, 地方政府活動을 뒷받침한다는 意味에 있어서의 地方財政의 純計規模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各級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그리고 教育費特別會計의 規模를 합하되 團體 간 內部去來를 상계 할 필요가 있다.

地方財政에 관한 統計도 60年代에 이르러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하게 되자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⁵⁾ 1963~72年期間의 地方財政 純計規模는 内務部가 매년 작성・발표하고 있는 地方財政의 決算資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1973年부터 内務部가 작성・발표하는 地方自治團體 決算總計 및 純計에는 各級團體의 一般會計와 公企業特別會計, 기타特別會計만을 포함하고, 地方自治團體 教育費特別會計는 그 決算規模 및 內容을 總計로 별도 표시하게 되어 地方財政의 總規模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研究에서는 1963~7年 期間 중의 地方財政規模는 内務部가 작성・발표한 既存統計에 의존하고 그 밖의 年度의 地方財政規模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와 其他特別會計(地方公企業特別會計 포함), 그리고 教育費特別會計의 決算資料에 따라 각각 그 總計와 純計規模를 산출하였다. 會計別 地方歲出決算純計規模(1962~79年, 抽出年度)는 〈表 1〉에 要約되고 있다. 이 중 1962年과 1973年的 純計規模는 다음과 같은 方式으로 계산되고 있다.

먼저 1962年 地方歲出決算純計는 會計別 歲出總額에서 각기 團體 간, 會計 간 內部去來에 따른 重複計算分을 相計하여 歲出純計를 산출하였으나 一般會計에 있어서는 道의 歲出 중

(4) 經濟企劃院이 발간하는 『豫算概要參考資料』(1977년 이후)에 수록되어 있는 「年次別財政規模」 참조.

(5) 1962년부터 地方自治團體決算資料가 體系的으로 정리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1962년도 地方財政의 歲出入은 總計로 표시되고 歲出入의 性質別 分析도 불충분하다.

〈表 1〉 會計別 地方歲出純計規模(1962~79年, 抽出年度) (單位: 10억 원)

	合計		一般會計		公企業・其他特別會計		教育費特別會計	
	金額	對GNP比率	金額	對GNP比率	金額	對GNP比率	金額	對GNP比率
1962	24.06	6.77	9.81	2.76	2.35	0.67	11.90	3.35
1963	28.08	5.59	13.17	2.62	2.71	0.54	12.20	2.43
1965	41.76	5.19	20.59	2.56	4.86	0.61	16.31	2.03
1967	86.71	6.77	41.24	3.22	11.85	0.93	33.64	2.63
1968	134.20	8.12	57.42	3.48	32.32	1.96	44.46	2.69
1970	237.49	8.68	114.20	4.18	42.27	1.55	81.02	2.96
1971	304.15	9.01	146.82	4.35	49.55	1.47	107.78	3.19
1973	394.41	7.33	186.12	3.46	74.70	1.39	133.59	2.49
1975	740.54	7.34	364.24	3.61	135.23	1.34	241.07	2.39
1977	1,382.46	7.63	652.52	3.61	232.17	1.29	497.77	2.75
1979	2,753.79	8.81	1,337.81	4.29	546.63	1.75	869.35	2.78

資料: 〈附表 1〉 參照。

〈表 2-1〉 1962年 地方歲出總計와 純計 (單位: 百萬 원)

	一般會計	其他特別會計	教育費特別會計	合計
歲出總計	12,657	2,395	18,999	34,051
(△變動關係)	△ 2,848	△ 42	△ 7,103	△ 9,993
地方交付稅	712	—	—	712
市・郡補助	1,108	—	188	1,296
他會計轉出	964	42	—	1,006
徵收交付金	64	—	—	64
教育交付金	—	—	6,915	6,915
歲出純計	9,809	2,353	11,896	24,058

資料: 內務部,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1962.

〈表 2-2〉 1973年 地方歲出總計와 純計 (單位: 10억 원)

	一般會計	公企業・其他特別會計	教育費特別會計	合計
歲出總計	235.5	77.8	203.2	516.5
(△變動關係)	49.4	3.1	69.7	122.2
轉出金	4.9	—	—	4.9
補助金	15.4	1.3	0.5	17.2
交付金	29.1	1.8	—	30.9
教育交付金	—	—	69.2	69.2
歲出純計	186.1	74.7	133.6	394.4

資料: 內務部, 『地方財政年鑑』, 1974.

市・郡에 交付된 地方交付稅와 補助金, 徵收交付金, 一般會計로부터 其他特別會計 및 教育費特別會計에 轉出된 支援諸費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其他特別會計의 歲出總計에서는

一般會計에의 轉出分이 상계되고 있다. 教育費特別會計에서는 市·郡教育區에 대한 道教育委員會의 補助와 義務教育財政交付金의 交付分이 상계되고 있다. 그런데 内部去來에 따른 重複計算分은 教育費特別會計에 있어서 가장 크며 그 規模는 歲出總額의 37.4%에 달하고 있다. 一般會計에 있어서도 그 比重은 22.5%에 이르고 있고 地方歲出全體로서는 29.4%에 달하고 있다.

다음에 1973年 地方歲出總計와 純計 간의 變動關係는 <表 2-2>에 표시되어 있다. 一般會計에 있어서는 他會計에 대한 轉出金, 市·郡에 대한 道의 補助, 市·郡交付, 徵收交付金과 같은 轉出用諸費의 重複計算分이 상계되고, 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에 있어서는 補助金과 交付金形態의 會計 간 團體 간 内部去來가 상쇄되고 있다. 教育費特別會計에 있어서는 市·郡教育區에 대한 補助와 教育交付金의 交付分이 상계되고 있다. 1973年에 있어서도 内部去來에 따른 重複計算分은 地方歲出總計의 23.7%를 점하였다. 會計別로 보면 教育費特別會計의 경우 34.3%, 一般會計는 21%에 각각 이르고 있었다. 1974~79년 期間중의 地方歲出決算純計規模도 1973年度와 같은 方法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1979年부터 「道에 대한 市·郡의 負擔金」과 「自治團體를 통한 融資金」도 内部去來에 따른 重複計算分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方法으로 산정한 地方財政의 歲出純計規模는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出帆하였던 1962年에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하여 6.77%에 달하였으나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後半期인 60年代末과 70年代初에는 그 相對的 規模가 9%에 달하는 급격한 膨脹勢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72年부터 地方財政의 膨脹勢는 현저하게 둔화되어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한 地方歲出純計規模는 1974年에는 6.9%로 크게 떨어졌고, 1976年에도 7.2%水準에 머물렀다. 이 같이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한 地方財政의 相對的 規模가 收縮되었던 것은 1972년 8월 3일에 발동된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大統領緊急命令」의 일환으로 地方交付稅 및 地方教育財政交付金의 法定交付率制⁽⁶⁾가 그 效力を 정지당하게 되어 財源制約가 가증된 것과 1973년 10월의 1次石油波動 이후 內外經濟與件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74년 1월 14일에 발동된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緊急措置」로 緊縮財政이 불가피하게 된 데 연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77年부터 地方歲出規模는 다시 實質的인 膨脹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地方自治團體의 自體 財源調達ability이 크게 伸張된 데 기인하였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⁷⁾

(6) 당시 地方交付稅財源은 內國稅收入의 17.6%, 地方教育財政交付金은 內國稅總額의 12.98%로 法定化되어 있었다.

(7) 財務部, 『韓國稅制史』(上卷), 1979, p. 448.

1976年에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하여 7.2%로 수축되었던 地方歲出의 상대적 規模는 1977년에 7.6%, 1978년에 7.9%, 1979년에 8.8%로 계속 擴大되었으나 이期間中 地方稅制 및 稅政의 개선으로 地方稅負擔率은 1976年の 1.6%에서 1977년에는 1.9%臺로 높아졌고, 1979년에 이르기까지 그水準이 유지되었다.

다음에 地方財政規模의 推移를 會計別로 보면 60年代에서 70年代初에 이르기까지 一般會計와 地方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를 포함하는 地方一般事業 및 非金融公企業部門의 歲出伸張率이 地方財政規模의 膨脹을 주도하였고 地方教育事業部門의 歲出은 오히려 그 상대적比重이 1962年の 49.5%에서 1971년에는 35.4%로 저하되었다. 1962~71年期間中 地方歲出의 膨脹에 대한 會計別 寄與率을 계산하여 보면 一般會計는 48.9%, 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는 16.9%, 教育費特別會計는 34.2%가 된다. 70年代에 地方歲出에서 점하는 教育費特別會計의 比重은 더욱 떨어져 1979년에는 31.6%로 低下되었고, 地方歲出의伸張은 역시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와 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의 規模增大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2. 地方制度의 改革과 地方財政

1949年に 처음으로 地方自治制를 실시하였을當時⁽⁸⁾ 地方自治團體는 特別市와 道·市·邑·面으로 구성되어 그數가 1,552개團體(1特別市, 9개道, 19개市, 75개邑, 1,448개面)으로 구성되었다. 50年代에 市와 邑이 늘어나고 面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邑·面을基礎的自治團體로 하는 地方自治制의 基本骨格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5.16革命後 軍事政府는 종래의 邑·面自治制를 폐지하고, 새로이 郡을基礎的自治團體로 하는 地方制度의改革(1961년 10월 1일 施行)과 地方財政의 自立度를 높이기 위한 地行稅制의 대폭적인改革(1962년 1월 1일 발효)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현행 地方制度와 地方稅制의 구격이 마련되었으며 여기서는 60年代初에 실시된 두가지 制度改革의意義와 地方財政에 대한 그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 현재 85개 邑과 1,407개面을 포함하는 地方自治團體總數는 1,528개團體에 달하였으며 住民自治라는 관점에서는 理想的인 制度의 基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邑·面의 自主的財政基盤이 매우 취약하였기 때문에 團體自治라는 관점에서 住民의 意思를 반영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地方公共서비스를 紿付하는 데에는 不適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邑·面財政이 交付金이나 補助金 등 國庫財源에 대한 依存度가 매우 높았을뿐만 아니라 地方經費의 대부분을 一般行政費에 총당하고 있었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

(8) 1949年 7月 4日 地方自治法 공포, 同年 8月 15日 발효.

〈表 3〉 地方自治團體의 數와 그 推移

	特別市·直轄市·道	市	郡	邑·面	合計
1 9 6 0	10	26	—	85(邑) 1,407(面)	1,528
1 9 6 2	10	31	139	—	180
1 9 6 3	11	30	139	—	180
1 9 7 1	11	30	140	—	181
1 9 7 5	11	33	138	—	182
1 9 7 9	11	36	138	—	185

資料：經濟企劃院，『韓國統計年鑑』，各年度。

1960年度 邑·面 一般會計歲入決算分析에 의하면 地方分與稅, 補助金, 還付金, 交付金 등 依存收入이 歲入總額의 47.3%를 占하였고, 面에 있어서는 그 比重이 72.8%에 달하였다. 그 반면에 邑·面歲入에서 地方稅가 占하는 比重은 1960年度에 邑에 있어서는 28.1%, 面은 10.7%에 불과하였다. 한편 邑·面의 歲出에 있어서는 一般行政費가 압도적으로 높은 比重 을 차지하였고, 事業費의 比重은 매우 낮았다. 1960年度 邑歲出에 있어서 一般行政費는 69%에 달하고 轉充用諸費를 除外한 事業費의 比重은 29%에 불과하였다. 더우기 面歲出에 있어서는 一般行政費가 84.7%를 占하였고 轉充用諸費를 제외한 事業費의 比重은 14.9%에 지나지 않았다。⁽⁹⁾

그리하여 邑·面自治制를 폐지하고 郡을 基礎的 自治團體로 삼게 된 1961년의 地方制度 改革은 地方自治團體(基礎的自治團體)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全國的으로 均一的인 地方 公共서비스를 紿付하도록 하는 한편 地方財政運營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 테 그目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住民自治보다 團體自治의 經濟的 基盤을 확충하자는 데 그 動機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郡自治制를 실시하게 된 주요原因의 하나는 邑·面의 財政自立度가 너무나 미약하여 經常的 經費조차 스스로 마련할 수 없었다는 것에 있었다.」⁽¹⁰⁾고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動機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의 規模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地方公共서비스의 改善이나 地方財政의 效率化를 기할 수 없기 때문에 地方制度改革(1961년 10월 1일 실시)과 함께 地方稅制의 대폭적인 改編이 推進되고 1962년 1월 1일부터 改編 地方稅制가 발효되었다.

1961年末에 실시된 地方稅制改革은 종전의 稅制改革과 달리 國稅와 地方稅의 稅源을 再分配함으로써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財源調達能力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目的에서 이

(9) 1960年度 邑·面 一般會計歲出入分析은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1963年度』에 수록된 地方自治團體一般會計歲出入決算累年表(1951~63年)에 의거하고 있음。

(10) 内務部, 『地方財政의 現況과 展望』(1964~1965), p. 3.

투어졌다. 1961년 현재 地方稅體系는 道稅가 國稅附加稅(營業稅, 鑛稅, 自動車稅에 대한 附加稅)와 戶別稅, 家屋稅, 取得稅 등 11개 道獨立稅⁽¹¹⁾로 구성되고, 市·邑·面稅가 上記한 國稅附加稅와 道稅附加稅, 그리고 車輛稅와 交通稅와 같은 獨立稅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밖에 洞稅와 里稅, 共同施設稅, 道路整備施設稅, 地方教育稅가 있었다. 1961年度에 地方稅徵收額은 24억 3,600萬원에 달하였으나 地方稅負擔率(對 GNP比率)은 0.83%에 불과하였다.

國稅와 地方稅源의 再配分에 主眼點을 두고 실시된 1961年度 地方稅制改革에 따라 國稅 중 地方稅的 性格을 가진 農地稅, 自動車稅, 遊興飲食稅, 鑛區稅 및 馬券稅가 地方에 이양되었던 反面에 地方稅 중 漁業稅, 特別行爲稅, 交通稅 등이 國稅로 흡수되었다. 그 밖에 오랜 歷史를 가진 戶別稅를 폐지하였던 대신에 國稅附加稅로서 稅收의 伸張性이 큰 所得稅附加稅와 法人稅附加稅를 신설하였다. 또한 市·郡稅로서 종전과 같이 國稅附加稅와 道稅附加稅를 두었으나 특히 市·郡의 財政自立度를 높이기 위해 財產稅와 農地稅를 市·郡獨立稅로 신설하는 한편 都市計劃稅와 共同施設稅를 目的稅로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62年度 地方稅稅收는 前年對比 2.1倍의 규모로 늘어 나고 地方稅負擔率도 1.47%臺로 높아졌다.

이 같이 地方自治團體의 自立財源을 크게 늘렸던 1961년 말 地方稅制改革은 地方財政規模(純計)를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表示하여 60年代初의 5.7%水準에서 1962년에는 6.8%臺로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라 地方財政의 歲出入構造도 크게 變化시켰다. 地方自治團體一般會計歲入構成에 있어서 自體收入(地方稅와 稅外收入)의 比重을 60年代初의 28%水準에서 1962年度에는 일약 55%水準으로 높인 것이나 同歲出構造에 있어서 公益事業, 社會福利事業, 產業經濟事業 등 住民福祉와 직결되어 있는 地方事業費의 比重을 근 40%水準(1961년도는 24.6%)으로 끌어올린 것 등이 그러한 構造變化에 해당한다. 그 밖에 종전에는 地方自治團體一般會計를 통하여 交付金, 補助金, 還付金 形태로 教育區財政을 지원하던 것을 地方教育費特別會計를 신설하여 教育費豫算을 一般豫算과 엄격히 분리시키게 된 결과로 一般會計에 대한 國庫支援이 감소된 반면에 教育費特別會計의 규모가 크게 늘어 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團體別로 보면 郡財政의 기능이 크게 擴大되었다. 1960년도에는 邑·面의 一般會計歲入에서 自體收入의 比重은 30.7%에 불과하였으나 1962년도에는 그 比重이 근 70%로 上昇되었다. 이에 따라 郡一般會計歲出에서 占하는 事業費의 比重은 1960년도의 17%水準에서 1962년도에는 40%를 상회하게 되었다.

3. 中央과 地方간의 財源配分

(11) 기타 獨立稅는 林野稅, 屠畜稅, 漁業稅, 特別行爲稅, 動力稅, 船稅, 免許稅가 있었으나 이들 稅目的 道稅收入上의 比重은 1961年에 13.6%에 지나지 않았다.

〈表 4〉 地方財政의 總計規模와 純計規模(1958~62年)(歲出基準) (單位: 百萬원)

	1 9 5 8	1 9 5 9	1 9 6 0	1 9 6 1	1 9 6 2
歲 出 總 計	16,605	19,440	21,108	24,876	34,051
一 般 會 計	10,012	11,908	13,156	15,109	12,657
其 他 特 別 會 計	1,713	2,060	2,147	1,483	2,395
教 育 區 財 政	3,880	5,474	5,805	8,284 ⁽¹⁾	18,999
歲 出 純 計 ⁽²⁾	11,457	13,087	13,889	16,757	24,059
對 GNP 比 率 (%)	5.6	6.0	5.7	5.7	6.8

資料：內務部,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1963.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3 및 1964.

註：(1) 資料事情으로 推定.

(2) 一般會計의 轉充用諸費 及 地方交付稅, 轉出金, 教育委員會費, 道立大學費, 補助金, 還付金, 交付金을 相計. 資料制約 때문에 其他特別會計, 教育區財政의 轉出金은 정확히 上계하지 못하였음.

〈表 5〉 中央政府와 地方間의 實質的 財源配分(歲出純計基準) (單位: 10억 원)

	總財政規模		中央政府 ⁽¹⁾		地 方 ⁽²⁾		地方의 상대적 比重(%)
	金額	對 GNP 比率(%)	金額	對 GNP 比率(%)	金額	對 GNP 比率(%)	
1 9 6 2	130.2	36.6	106.1	29.8	24.1	6.8	18.5
1 9 6 3	123.8	24.6	95.7	19.0	28.1	5.6	22.7
1 9 6 5	174.8	21.7	133.0	16.5	41.8	5.2	23.9
1 9 6 7	325.5	25.4	238.8	18.6	86.7	6.8	26.6
1 9 6 9	661.9	30.7	471.4	21.9	190.5	8.8	28.8
1 9 7 0	695.2	25.4	457.7	16.7	237.5	8.7	34.2
1 9 7 1	863.8	25.6	559.6	16.6	304.2	9.0	35.2
1 9 7 3	1,149.5	21.4	755.1	14.0	394.4	7.3	34.3
1 9 7 4	1,709.7	22.8	1,192.7	15.9	517.0	6.9	30.2
1 9 7 5	2,482.2	24.6	1,741.7	17.3	740.5	7.3	29.8
1 9 7 7	4,424.0	24.4	3,041.5	16.8	1,382.5	7.6	31.3
1 9 7 9	7,929.2	25.4	5,179.8	16.6	2,749.4	8.8	34.7

資料：〈附表 3〉 參照.

註：(1) 地方에 대한 財源移轉分 차감. (2) 各會計(教育費特別會計 포함)의 合計.

中央政府의 一般會計와 其他特別會計의 歲出純計規模는 매년 公表되고 있으므로 이에 地方財政의 歲出純計規模를 합하고 中央政府로부터 地方自治團體에 이전된 國庫財源의 重複計算分을 공제하면 中央과 地方을 합한 總財政規模를 산출할 수 있다.⁽¹²⁾ 〈表 5〉의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간의 實質的 財源配分」은 이미 발표되고 있는 地方財政의 規模(中央財政 및

(12) 현재 발표되고 있는 總財政規模는 中央政府의 一般會計 및 其他特別會計의 純計規模(歲出基準)에 中央財政 및 他地方財政에서의 依存收入을 제외한 地方財政規模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어 地方財政의 實質規模를 알 수 없다.

〈表 6〉 總財政規模推計의 比較

(單位 : 10억 원)

	既存推計 (1)	本研究推計 (2)	差 (2)-(1)		既存推計 (1)	本研究推計 (2)	差 (2)-(1)
1968	460.0	461.3	1.3	1974	1,707.8	1,709.7	2.1
1969	662.9	661.9	△1.0	1975	2,480.1	2,482.2	2.1
1970	696.8	695.2	△1.6	1976	3,362.6	3,363.9	1.3
1971	860.3	863.8	3.5	1977	4,424.5	4,424.0	△0.5
1972	1,112.2	1,112.2	...	1978	6,057.8	5,798.2	△259.6
1973	1,146.7	1,149.5	2.8	1979	8,240.1	7,929.2	△310.9

資料 : 〈附表 3〉, 〈附表 4〉 參照.

他地方財政에서의 依存收入을 제외한 自體財源에 의한 歲出規模)에 地方에 대한 國庫財源移轉分을 合算하여 계산하지 않고 地方財政의 決算資料에 따라 각별 會計別 歲出純計와 地方에 대한 國庫財源의 移轉分을 계산하여 總財政規模를 구하였다. 이 같은 方法에 의하여 總財政規模를 산출한 것은 기존 統計와의 對查를 위한 것이며 結果는 〈表 6〉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1968~77년 期間 중의 總財政規模에 관한 한 既存推計와 本研究推計 간에는 극히 근소한 差異 밖에 없다. 그러나 1978년과 1979년의 總財政規模에는 상당히 큰 差異가 있다.⁽¹³⁾ 이는 既存推計가 地方財政의 自體財源에 의한 歲出充當分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既存推計에 의하면 地方財政의 一般會計規模(中央財政 및 他地方財政에서의 依存收入을 제외한 규모)은 1978년에 7,327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地方自治團體 一般會計決算資料에 의하면 自體財源에 의한 歲出充當分은 5,341억 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差異는 1,986억 원에 이르고 있다. 1979년도에도 自體財源에 의한 一般會計歲出充當額의 推定은 既存推計가 3,014억 원이나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다. 그 밖에 既存推計는 公企業特別會計나 教育費特別會計에 있어서도 그 規模를 과다하게 推定하고 있다. 1978년도에 과다하게 계상된 규모는 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에 있어서는 330억 원, 教育費特別會計에 있어서는 281억 원에 달하고 있다. 또 1979년도에도 既存推計는 教育費特別會計에서 402억 원 가량 과다 계상하고 있는 반면에 地方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에 있어서는 304억 원 가량 과소 계상하고 있다.

本研究의 推計에 따라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간의 實質的 財源分配을 보면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推進하였던 1962년 이후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끝마쳤던 1971년에 이르기까지 地方自治團體의 可用財源이 實質的으로 크게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總財政에서 占하는 그 相對的 比重도 크게 높아졌던 것을 알 수 있다. 歲出純計로 본 地方財政의

(13) 本研究推計에 대하여는 〈附表 5-1〉, 〈附表 5-2〉 參照.

規模는 이미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하여 1962년의 6.8%에서 1971년에는 9%臺로 높아졌고, 總財政에서 占하는 地方財政의 比重은 1962년의 18.5%에서 1971년에는 35.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72년부터 國際的인 物價昂騰과 國際收支不均衡의 확대, 1次 石油波動(1973년 10월), 世界的인 景氣後退(1974~75년) 등으로 內外經濟與件이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8.3措置」(1972년 8월 3일), 「1.14措置」 등이 취하여지게 되자 中央財政은 말할 것도 없고 地方財政도 緊縮運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8.3措置」는 私債의 동결과 함께 財政運用의 彈力化와 效率化를 위하여⁽¹⁴⁾ 地方財政交付稅 및 教育交付金의 法定交付率制의 기능을 정지시켰으며, 「1.14措置」는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하여 財政部門의 緊縮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하여 1971년에 9%臺로擴大되었던 地方財政規模는 1972년부터 그 상대적 규모가 감축되어 1974년에는 6.9%水準에 까지低下되었고 1979년에 이르기까지 60年代末내지 70年代初 水準에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8.3措置」에 따른 地方財政交付金의 法定交付率 기능정지가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財源의 中央集中化傾向에 수반되었던 菲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0~70년대 地方財政部門의 成長은 中央과 地方 간의 財源分配面에서 보면 60년대의 地方分權化傾向과 70년대의 中央集權化傾向이라는 상반된 政策基調에 의하여 特徵지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政策基調의 변화는 中央政府로부터 地方自治團體에 이전된 國庫財源의 크기나 地方稅의 규모가 변화하였던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地方交付稅(地方財政調整交付金)과 徵收交付金, 國庫補助金, 教育交付金, 教育交付稅 還付金으로 구성되고 있는⁽¹⁵⁾ 中央政府로부터 地方自治團體에 이전된 國庫財源의 규모는 1970년에 이르기까지 그 絶對的 規模나 中央財政 및 地方財政에 대한 상대적 比重이 크게 높아졌다. 1962년도에 발효된 대폭적인 地方稅制改革은 地方財政의 自立度⁽¹⁶⁾를 1961년도의 28.6%에서 55.1%로 높였으나 地方教育費의 근 80%가 國庫財源에 의존하고 있었던 까닭에 1962년도에도 國庫移轉財源의 比重은 地方歲出(純計)의 57.3%라는 높은 水準에 달하고 있었으며 1970년도에 그 比重은 근 60%에 접근하였다. 또 中央財政에 대한 國庫移轉財

(14) 당시 地方財政交付金의 財源規模가 內國稅總額의 30.58%(地方交付稅 17.6%, 教育交付金 12.98%)로 法定化되고 있었기 때문에 防衛費와 그 밖의 義務的 經費와 함께 中央財政支出을 크게 制約하였다.

(15) 土地收得稅의 1.82%(1961년에 폐지), 國稅教育稅의 30%(1961년에 폐지), 入場稅의 50%(1962년에 폐지), 土地收得稅還付金은 義務教育財源에 充當하고, 그 밖의 還付金은 自體財源에 充當하였다.

(16) 一般會計歲入總計에서 占하는 地方稅收入과 稅外收入의 比重이며, 地方稅收入의 比重은 1961년도의 15.1%에서 1962년도에는 38.1%로 높아졌다.

〈表 7〉 主要 地方歲入財源의 配分

(單位 : %)

	國 庫 依 存 財 源 ⁽¹⁾			租 稅	
	規 模(10억 원)	中 央 財 政에 대 한 比 重(%)	地 方 財 政에 대 한 比 重(%)	國 稅 負 擔 率	地 方 稅 負 擔 率
1 9 6 0 ⁽²⁾	10.1	23.6	72.7	11.14	0.90
1 9 6 2	13.8	11.5	57.3	9.14	1.47
1 9 6 5	21.1	13.7	50.5	7.33	1.42
1 9 6 8	76.1	18.9	56.8	12.75	1.18
1 9 7 0	141.9	23.7	59.8	13.34	1.22
1 9 7 2	199.3	20.6	57.8	11.47	1.13
1 9 7 3	204.7	21.3	51.9	10.76	1.38
1 9 7 4	235.6	16.5	45.6	12.18	1.44
1 9 7 6	530.6	18.3	53.1	15.08	1.59
1 9 7 7	676.3	18.2	48.9	14.48	1.86
1 9 7 9	1,286.7	19.9	46.7	15.24	1.92

資料 : 〈附表 2-1〉。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4.

註 : (1) 歲出純計에 대 한 比 重.

(2) 國庫依存財源의 규모 및 比 重은 推定.

源의 比 重은 1962년에 11.5%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년도에는 23.7%로 높아졌다. 그러나 「8.3措置」로 地方財政交付金의 法定交付率制가 기능을 정지 당한 후부터 國庫移轉財源의 絶對額은 늘어났으나 中央財政 및 地方財政에서 占하는 그 比 重은 모두 低下되었다. 특히 地方歲出純計에서 占하는 國庫支援의 比 重은 1970년도의 59.8%에서 1979년도에는 46.7%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地方自治團體의 自體財源인 地方總收入은 1961년 말 地方稅制改革에 따라 크게 늘어난 후 1972년에 이르기까지 그 實質增加率은 계속 둔화되었으나 1973년부터 稅收增大를 위한 地方稅制의 改革이 적극 推進됨에 따라 地方稅負擔率은 1972년의 1.13%水準에서 70年代末까지는 1.92%水準으로 높아졌다.

60~70年代 高度成長期의 主要財政指標를 요약하면 〈表 8〉과 같다. 이에 따라 60年代와 70年代의 地方財政規模의 膨脹에 관한 分析結果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60年代에 歲出純計로 본 地方財政規模는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하여 1961년의 5.7%水準에서 1969년에는 9%水準으로 크게 擴大되었다. 둘째로 60年代 初期의 地方財政膨脹은 1962년부터 발효된 國稅와 地方稅 간의 稅源再配分을 도모하였던 地方稅制改革으로 地方自主財源이 크게 擴充된 데 艏 받침되고 있다. 즉 地方稅負擔率은 1961년의 0.8%水準에서 1962년에는 1.5%로 높아졌다. 세째로 그러나 60年代를 통괄하여 보면 地方歲出의 膨脹은

〈表 8〉 主要財政指標의 推移

(單位 : %)

	1 9 6 1	1 9 6 2	1 9 6 9	1 9 7 0	1 9 7 9
經濟成長率(期間平均)	5.59	8.89		9.38	
主要財政指標(對 GNP比率)					
財 政 規 模 ⁽¹⁾					
總 財 政 規 模	28.3	36.6	30.9	25.5	25.4
中 央 政 府	27.1	33.7	26.9	21.9	20.7
對 地 方 移 轉	4.5	3.9	5.0	5.2	4.1
地 方 自 治 團 體 ⁽²⁾	5.7	6.8	9.0	8.7	8.8
租 稅 負 擔					
國 民 租 稅 負 擔 率	9.6	10.6	14.6	14.5	17.2
國 稅 負 擔 率	8.8	9.1	13.3	13.3	15.3
地 方 稅 負 擔 率	0.8	1.5	1.2	1.2	1.9

資料：財務部, 『決算概要』, 各年度。

内務部,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地方財政年鑑』, 各年度。

<附表 1, 2, 3>

註：(1) 歲出純計。

(2) 1961년은 推定。

國稅의 增收로 늘어났던 國庫財源을 地方自治團體에 이전시키는 中央政府의 支援이 擴大된 데 연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中央政府로부터 地方에 이전된 國庫財源의 규모는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하여 1962년의 3.9%에서 1969년에는 5%로 높아졌다. 네째로 70년대에는 60년대와 달리 地方에 대한 國庫支援增加率이 둔화되어 地方歲出의 增加率도 둔화되었으나 地方財源을 증가시키기 위한 自體의 努力이 증대되어 70년대 말에는 다시 地方歲出이 擴大되었다. 地方稅負擔率이 1970년의 1.2%에서 1979년에 1.9%로 높아졌던 것이나, 70년대 중반기에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하여 7%를 前後하는 水準에까지 떨어졌던 地方歲出規模가 1977년부터 다시 上昇勢를 나타내어 1979년에는 8.8%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III. 地方財政의 機能分析

經濟成長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社會間接資本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經濟開發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公共投資의 증대가 불가피하고 그에 대한 地方財政의 기능분담도 확대되지 않을 수 없다. 60년대와 70년대 地方歲出의 實質的膨脹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事業部門(一般會計와 地方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 포함)의 확대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것은 바로 地方財政의 資本形成的活動이 중요한 意義를 갖게 되었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

〈表 9〉 地方制度 및 地方稅制改革前後의 郡財政(郡一般會計歲出決算)

	1960 ⁽¹⁾		1961 ⁽²⁾		1962 ⁽³⁾	
	金額	%	金額	%	金額	%
一般行政費	1,694.9	82.6	1,713.7	77.5	2,030.9	53.9
移轉的經費	12.0	0.6	18.0	0.8	208.2	5.6
事業費	343.8	16.8	479.1	21.7	1,526.3	40.5
合計	2,050.7	100.0	2,210.8	100.0	3,765.4	100.0

資料：內務部, 『地方財政의 現況과 展望(1964~1965)』。

註：(1) 邑・面의 合計。 (2) 1961년 10월 邑・面自治制 폐지。 (3) 道地方稅制改革 발효。

60年代初반 하더라도 地方自治團體가 公益事業이나 地域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충당하였던 財源規模는 1960년도 一般會計에 한하여 보면 歲出總額의 12%를 넘지 못하였다。⁽¹⁷⁾ 그러나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출범한 1962년도에는 그 比重이 30%를 상회하였다. 이 같이 地方財政에서 公益事業이나 地域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財源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地方財政運營에 있어서 資本形成的活動을 최우선 課題로 삼았던 데도 그理由가 있으나 그 밖에 基礎的自治團體의 廣域化(郡自治制 實施)와 一般行政費의 節減 등 財政運營의 效率化에도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다.

邑・面自治制가 실시되고 있었던 1960년도에 邑財政 一般會計歲出에서 占하는 一般行政費의 比重은 69%, 面財政 一般會計歲出에서 占하는 同比重은 84.7%에 달하였고 邑・面平均으로서는 82.6%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郡을 基礎的自治團體로 삼고, 地方稅源을 대폭 擴充하였던 1962년도에는 그 比重이 53.9%로 壓縮되었다. 이와 함께 特別市나 道・市의 一般會計歲出에 있어서도 一般行政費의 節減이 추진되어 地方自治團體 一般會計歲出總額에서 占하는 一般行政費 및 轉充用諸費의 比重도 1960년도의 73.5%水準에서 1962년도에는 60.5%로 크게 減縮되었다.

한편 1962년 이후의 地方歲出을 機能別로 보면 60년대 및 70년대를 통하여 公益事業費의 比重이 계속 높아졌던 반면에 地方歲出中 그 比重이 가장 높았던 教育・文化事業費의 比重이 계속 떨어져 社會福利費의 比重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一般行政費는 70년대 초반까지 그 減縮壓力이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70년대 중반부터 그 比重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產業經濟費는 60년대를 통하여 그 比重이 계속 높아졌으나 70년대에는 그 比重이 점차 低下되는 경향을 보였다.

(17) 1960년도 地方自治團體 一般會計歲出決算에 의하면 歲出總額에 대한 公益事業費의 比重은 7.7%, 產業經濟費의 比重은 4.3%로 나타나고 있다. 内務部, 『地方財政의 現況과 展望(1964~1965)』。

〈表 10〉 地方歲出決算機能別分類⁽¹⁾(歲出純計) (單位: %)

	1962	1967	1972	1973	1977	1979
一般行政	15.4	15.0	14.1	14.3	17.7	15.2
公益事業	18.0	25.7	30.9	27.5	31.3	32.1
産業經濟	7.7	13.1	10.6	12.6	7.3	9.3
社會福利	54.2	45.9	42.4	40.1	42.6	39.7
(教育・文化)	49.4	38.8	36.4	33.9	36.1	31.6
民防衛	—	—	—	—	0.9	1.0
支援諸費	4.8	0.3	2.1	5.6	0.2	2.7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內務部,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地方財政年鑑』, 各年度。

註：(1) 教育費特別會計歲出은 全額을 社會福利費에 合算。

公益事業費의 比重上昇은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에 따라 地方財政에 있어서도 資本形成的活動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 데 연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公益事業費의 包括範圍가 道路・橋梁, 治水事業, 都市計劃, 都市土木, 安全管理, 住宅, 上水道 등에 관한支出을 망라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地方歲出 중 公益事業費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地方政府에 의한 總固定資本形成의 규모도 擴大되었다. 地方政府에 의한 總固定資本形成額은 1960년도에 地方歲出純計의 23.8%를 占하였으나 1969년도에는 38.6%라는 매우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고, 國內總固定資本形成에 대한 그 比重도 1971년에는 15.2%에 달하였다. 地方財政交付金에 대한 制約이 가하여 전 1973년을 前後하여 地方政府에 의한 總固定資本形成額의 상대적 比重도 크게 떨어지는 傾向을 보였으나 70년대 종반에는 地方自體財源調達努力에 힘입어 다시 그 상대적 比重이 높아졌다. 1979년도 地方政府에 의한 總固定資本形成額은 地方歲出純計의 30.5%를 占하였고 國內總固定資本形成에 대한 比重은 8.2%에 이르렀다.⁽¹⁸⁾ 더우기 注目되는 것은 60年代에 地方政府에 의한 總固定資本形成은 一般政府(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合計) 總固定資本形成額의 68.4%(平均)를 점하였고, 70年代에 있어서도 그 比重이 61.2%(average)에 달하였던 事實이다. 이 같이 地方政府에 의한 總固定資本形成은 그 量的面에서 보면 公共投資의 過半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地域經濟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活動과 함께 60~70년代 高度成長의 基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產業經濟費의 包括範圍는 農業, 畜業, 畜產, 商工, 水產, 農村振興, 農地改良, 林業, 觀光運輸 등 地域經濟의 發展과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事業費로 구성되어 있다. 地方歲出에서 占하는 產業經濟費의 比重은 60년대(1962~69년)에 약 12%水準에 달하였으나

(18) 〈附表 6〉 參照。

70년대에는 약 8%水準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比重의 크기나 그 변화에 의하여 地域經濟의 發展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기능의 중요도나 그 변화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地方自治團體의 產業經濟費가 대부분 民間生產者에 대한 支援事業費의 性質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生產에 대한 誘因은 歲出 이외에도 租稅, 金融, 行政指導 등 다양한 手段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 그리므로 1,2次 經濟開發計劃期間 중에는 農業生產力의 擴充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直接的인 支援이 불가피하였으나 開發의 成果가 결실을 보기 시작하였던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財源制約이 가증되어 產業經濟費의 상대적 比重이 低下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하여 教育・文化費를 포함하는 社會福利費의 比重은 계속 低下되었으나 이는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70년대에 있어서도 經濟開發을 우선한 태 기인하였던 結果였다고 할 수 있다. 教育費의 상대적 比重低下는 히스女史의 적절한 지적과 같이 「教育이란 보통 그 受益者一또는 그 學父母一가 악착같이 戰取하고자 하는 覺悟를 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 아마도 이 같은 理由 때문에 教育은 經費節約의 필요가 제기될 때에는 어느 때나 먼저 牺牲되고, 그 결과로 교육의 秩序 있는 발전이 저해되어 왔다.」⁽¹⁹⁾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社會福利費는 社會事業, 保健事業, 清掃・衛生事業에 관한 支出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社會開發支出의 比重은 第4次計劃이 推進(1977年)되기 이전에는 地方 歲出에서 대체로 5%내지 6%를 前後하는 水準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IV. 地方歲入源 分析

地方歲出의 증대에 상응하여 地方歲入도 늘어났으나 60年代 그리고 70年代初에는 주로 國庫依存收入의 증가에 의하여 70年代에는 주로 地方稅收入과 稅外收入 등 自體收入의 증가에 의하여 地方歲入이 늘어 났다.

1960년도만 하더라도 地方歲入純計에서 占하는 國庫依存財源의 比重은 무려 70.7%에 달하였고 다종다양한 稅目에 의하여 地方稅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 稅收가 地方歲入에서 占하는 比重은 15%를 넘지 못하였다. 또 地方稅源의 積충에 주목적을 두었던 地方稅制改革이 발효한 1962년도에 있어서도 歲入純計에서 占하는 地方稅收入의 比重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水準이었다. 그러나 地方稅源의 積충과 함께 依存收入의 상대적 규모는 대폭 감축되

(19) Ursula K. Hicks, *British Public Finances: Their Structure and Development, 1880~1952*, Ch. 2.

〈表 11〉 主要地方財源의 推移

(單位 : 10억 원, %)

		歲 入 純 計		地 方 稅 ⁽¹⁾		依 存 收 入	
		金 額	對 GNP 比率(%)	決 算 額	對歲入純計 比率(%)	決 算 額	對歲入純計 比率(%)
1	9	6	0	14.33	5.85	2.16	14.8
1	9	6	2	25.85	7.27	5.21	20.2
1	9	6	3	30.76	6.12	7.40	24.1
1	9	6	5	44.51	5.53	11.36	25.5
1	9	6	7	90.72	7.08	14.08	15.6
1	9	7	0	242.97	8.88	33.16	13.7
1	9	7	2 ⁽²⁾	355.49	8.56	46.56	13.1
1	9	7	3	424.26	7.89	74.03	17.5
1	9	7	5	801.66	7.95	158.63	19.8
1	9	7	7	1,544.05	8.53	336.31	21.8
1	9	7	9	3,081.22	9.87	599.04	19.4
						1,286.69	41.8

資料：內務部,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地方財政年鑑』, 各年度.

註：(1) 決算額이 徵收額과 差異가 있음. (2) 當初決算.

이 地方財政은 使用料 및 手數料 등 稅外收入과 特別會計事業收入을 늘리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第 1 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期間(1962~66年) 중에는 依存收入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地方歲入에서 占한 地方稅收入의 比重도 높아지고 또 稅外收入이나 特別會計事業收入에 대한 依存度를 높일 수 밖에 없었으나 國民總生產의 成長과 關係하여 「보이온시」(bouyancy)의 積은 1963年에 1.0, 1964年에 0.84, 1962~66年期間 중에 0.96으로 각각 측정되어 所得成長에 상응하는 稅收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1962年과 1963年 그리고 1966年에 각각 地方稅制를 補完, 改善하여 稅收增大를 도모하였으나⁽²⁰⁾ 「보이온시」의 積은 1.06 程度로 높아졌을 따름이었다.

한편 第 2 次計劃이 실시된 1967~1971年期間 중에도 1967年度 2次에 걸쳐 地方稅가 改正(1968년 시행)되고, 1969年度에도 稅制의 補完이 있었으나 1967년부터 國稅附加稅가 폐지되고, 農地稅의 課稅最低限引上(1968년 시행), 農地稅의 基礎控除制 채택(1970년 시행) 등 負擔調整措置가 강구되었던 관계로 1967~71年期間 중 地方稅收入의 「보이온시」는 0.76까지低下되었다. 그 反面에 國稅附加稅를 폐지한 대신 그 財源을 地方交付稅로 충당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1976년부터 地方歲入의 地方稅依存度는 15% 또는 그 以下로 떨어졌고, 依存財源의 比重은 58%를 前後하는 水準에까지 높아졌다.

(20) 財產稅 중 家屋의 賦課指數表를 새로운 賃貸價格으로 代替, 取得稅 및 免許稅의 課稅對象追加(이상 1962년 개정), 取得稅 課稅對象追加, 自家用高級乘用車에 대한 自動車稅와 消防共同施設稅의 稅率引上(이상 1963년 개정), 法人稅附加稅의 施行 등(1966년 1次 개정, 同年 8월 실시).

그러나 第3次計劃의 推進과 함께 地方財源의 調達에는 다시 큰 變革이 가해졌다. 이미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1972년에는 「8.3措置」로 地方財政交付金의 法定交付率制가 그 效力을 정지당하게 되어 地方自治團體는 불가불 國庫財源에 대한 依存度를 낮출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도에는 住民稅의 신설과 稅制 全般에 걸친 改革이 단행되어 同年 4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이 稅制改革의 骨字는 住民稅(均等割과 所得割)를 신설한 것 이외에 地方稅 全般에 걸쳐 課稅對象을 확대하고 稅率을 인상 조정한 데 있었다. 그 結果로 地方稅收入은 1973년도에 前年比 59%의 純增을 나타내어 地方歲入에서 占하는 比重은 17.5%에 달하게 되었다. 그 反面에 地方財政의 國庫財源依存度는 48%臺로 떨어졌다.

이어 1974년에는 「1.14措置」가 발동되어 住民稅의 一部를 免稅내지 輕減하는 한편 奢侈性財產의 取得과 高級遊興場의 重課稅하는 緊急措置가 취하여졌고, 時限的 조치로 취하여졌던 住民稅의 一部 免稅내지 輕減을 제외하고 緊急措置의 內容을 대부분 地方稅制에 반영하여 197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74年度 地方稅法改正에서는 「1.14 緊急措置」의 內容과 같이 取得稅, 自動車稅, 遊興飲食稅, 財產稅 등의 稅率이 다시 引上되고 免許稅의 課稅對象에 새로이 91種이 추가되었다.⁽²¹⁾

이 같이 1974년에 「1.14措置」가 발동되고 또 同年度 稅法改正에 그 內容을 대부분 반영하였기 때문에 1974년도 地方稅收入은 前年比 45.7%가 늘어나고 1975년도에는 47%가, 1976년도에는 38.9%가 증수되었으나 1974~76년 期間 중 地方稅收入의 「보이온시」는 1.1程度에 머물렀다. 이는 地方稅가 주로 臺帳課稅나 資產課稅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所得成長에 따른 稅收의 彈力의 增收가 어렵다는 現行 地方稅制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地方稅源의 확충을 위해서는 稅率引上이나 課稅對象의 추가가 불가피하였으며, 1976년 이후 地方稅收의 증가는 거의 모두 稅收增大를 위한 地方稅制改革의 所產이라고 할 수 있다. 1976년도 地方稅法改正(1977년 시행)은 國稅體系에 附加價值稅가 도입됨에 따라 地方稅인 遊興飲食稅와 國稅인 登錄稅를 교환한 이외에 住民稅, 免許稅, 自動車稅, 財產稅, 消防共同施設稅 등 주요 稅目의 稅率을 引上하는 한편 取得稅와 財產稅의 課稅對象을 추가하고, 그 밖에 事業所稅를 신설하였다. 또 1978년도 地方稅法改正(1979년 시행)에서는 空閑地 및 非業務用土地에 대한 保有期間別 財產稅 差等課稅制를 도입하였다. 1979년도에도 2次에 걸쳐 地方稅法이 개정되었으나 1次改正(1979년 4월 시행)에서는 일부 自動車稅의 稅

(21) 住民稅(均等割)의 免稅點引上, 農地稅의 基礎控除額引上, 取得稅의 免稅點引上 등 負擔調整도 아울러 취하여졌다.

〈表 12〉 主要 地方稅의 稅收上 比重

(單位 : %)

	1962	1966	1969	1973	1976	1979
取 得 稅	8.3	15.8	27.2	26.8	26.5	22.5
登 錄 稅	—	—	—	—	—	15.4
住 民 稅	—	—	—	12.6	11.1	15.2
財 產 稅	11.1	6.5	11.3	13.0	17.1	13.6
自 動 車 稅	9.5	6.7	14.6	10.6	6.4	8.1
農 地 稅	39.0	30.7	18.0	10.9	14.4	9.0
遊 興 飲 食 稅	4.3	7.9	16.6	11.5	11.5	—
國 稅 附 加 稅	18.8	26.5	0.1	—	—	—
合 計	91.0	94.1	87.7	85.4	87.0	83.8
(其 他 稅)	9.0	5.9	12.3	14.6	13.0	16.2

資料：內務部, 『地方稅政年鑑』, 1983.

率이 인상되고 登錄稅의 課稅對象이 추가되었다. 이어 2次改正(1980년 시행)에서는 住民稅均等割의 稅率과 登錄稅의 定額稅率, 取得稅 및 事業所稅의 加算稅가 각각 引上내지 新設되고 住民稅의 課稅對象이 추가되었다.⁽²²⁾

이에 따라 1977년도부터 地方歲入純計에서 占하는 地方稅收入의 比重은 20%를 前後하는 水準으로 높아졌고 國庫財源에 대한 依存度는 43%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地方稅制는 60年代初에 3개 國稅附加稅의 種目과 8개 獨立稅, 5개 道稅附加稅, 2개 目的稅로 구성되는 매우 복잡한 稅制로 출발하였으나⁽²³⁾ 稅收上에서 보면 60년대에는 주로 取得稅와 財產稅, 自動車稅, 農地稅, 遊興飲食稅 그리고 國稅附加稅에 의하여 地方稅收入의 87% 이상 94%에 상당하는 稅收를 확보하였다. 70년대에는 住民稅, 事業所稅(目的稅)가 신설되고, 遊興飲食稅가 國稅로 흡수된 반면에 登錄稅가 地方에 이양되었으나 1973~76년기간 중에는 신설된 住民稅와 기존의 取得稅 등 5개 稅目에 의하여 稅收의 85% 이상 87%에 상당하는 財源을 조달하였다. 70년대 말에는 地方稅로 이양된 登錄稅 取得稅 등 기존의 5개 稅目에 의하여 稅收의 83.8%를 조달하였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하여 볼 때 農民의 負擔調整을 위한 政策的인 配慮 때문에 農地稅의 稅收上 比重이 크게 떨어지는 構造的 變化와 함께 住民稅를 제외한 그 밖의 主要稅目이 모두 臺帳課稅나 資產課稅로 구성되어 있어 稅收의 所得彈力性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년대와 70년대에 빈번하게 이루어 진 地方稅制改革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를 높

(22) 個人事業場을 法人稅均等割의 課稅對象에 추가하였다. 그밖에 農地稅의 基礎控除額과 住民稅·農地稅 등의 小額不徵收額을 인상하는 등 負擔調整도 이루어졌다.

(23) 1967년부터 國稅附加稅가 폐지되고 道稅附加稅는 1976년도 稅法改正에서 폐지되었다.

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2년도에 발효된 대폭적인 地方稅制改革은 地方自治團體一般會計歲入에서 占하는 地方稅收入의 比重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1960년도 團體別 一般會計歲入에서 占하는 地方稅收入의 比重은 特別市·道가 13.9%, 市가 22.6%, 邑·面이 13.1% (邑은 28.1%, 面은 10.7%)에 불과하였으나 1962년도에는 特別市·道가 29.4%, 市가 30.7%, 郡이 57%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地方稅의 稅收彈力性이 작았던 관계로 部分的인 稅制의 補完이 빈번히 이루어졌음에도 不拘하고 團體別 地方稅依存度는 특히 國稅附加稅가 폐지된 1967년도부터 계속 떨어져 1971년도에 團體別 地方稅依存度는 特別市·道가 29.5%⁽²⁴⁾, 市가 19.7%, 郡이 11.6%라는 매우 낮은 水準을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8.3措置」 이후 國庫支援에 대한 制約이 가증되자 稅收增大를 위한 거듭된 稅制改革에 힘입어 團體別 地方稅依存度는 1973년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79년도 團體別 地方稅依存度는 特別市·道가 39.6% (道部만은 8.1%), 市가 28.1%, 郡이 17.3%에 각각 달하였다.

이 같이 地方財政의 自主財源調達能力이 증대되는 가운데 地方財政의 國庫財源依存度는 1973년도부터 계속 떨어졌으나 地方教育財政은 그 性格上 國庫財源依存度가 높아졌다. 1979년도에 地方自治團體一般會計는 그 歲入財源(純計)의 37.1%를 國庫財源에 의존하였고, 教育費特別會計는 그 歲入純計의 76.2%를 教育交付金과 國庫補助金으로 充當하였다.

V. 地方債의 活用

地方自治團體도 所要財源을 地方稅나 稅外收入(財產收入이나 使用料·手數料 등) 혹은 國庫支援으로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借入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一般的인 財政赤字를 보전하기 위한 借入의 累積은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資產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租稅收入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徵稅力의 制約을 받고 있는 地方自治團體로서는 그러한 借入이 적절한 財源調達手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公共投資에 필요한 資金을 借入할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資產이 創出되기 때문에 그 資產으로부터 발생하는 所得으로 借入한 元利金의 全部 또는一部를 상환할 수가 있어 借入은 적절한 財源調達手段이 될 수 있다.

政府部門의 과대한 借入과 負債의 累積은 通貨의 國際的 地位를 약화시키는 인플레이션效果와 함께 民間資金需要를 억제하는 「크라우딩」(crowding)效果를 유발하기도 하고 公債元利金의 償還負擔을 늘려 財政破綻의 危機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정한 借入은 増稅壓力을

(24) 道部에 한하면 8.2%에 불과하였다.

〈表 13〉 地方債收入의 比重(歳入純計에 대한 比重) (單位: 百萬원, %)

	合 計		一 般 會 計		公企業・其他特別會計		教育費特別會計	
	金額	比 重	金額	比 重	金額	比 重	金額	比 重
1 9 6 2	126	1.07	N.A.	...	3	•
1 9 6 3	113	0.70	N.A.	...	—	—
1 9 6 5	1,219	2.74	106	0.46	1,108	23.7	5	•
1 9 6 8	13,385	9.42	503	0.76	12,882	42.7	—	—
1 9 7 1	17,602	5.68	4,297	2.74	9,721	20.3	3,584	3.41
1 9 7 2	20,466	5.76	9,019	4.96	9,310	17.8	2,137	1.68
1 9 7 3	19,497	4.60	2,806	1.29	14,721	20.4	1,970	1.46
1 9 7 5	34,328	4.28	4,426	1.03	24,588	19.2	5,314	2.18
1 9 7 7	42,184	2.71	19,861	2.43	20,862	9.2	1,461	0.29
1 9 7 9	173,123	5.62	87,915	5.53	85,193	14.6	15	•

資料：內務部,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地方財政年鑑』, 各年度.

회피하면서 經濟 및 社會開發에 기여할 수 있는 公共投資를 증대시키는 利點도 갖고 있다.

60년대의 財政政策은 安定基調를 유지하기 위한 財政赤字와 인플레이션의 抑制에 力點을 두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61년에 중단하였던 財政安定計劃⁽²⁵⁾을 부활(1963년)하고, 國債發行을 止揚한 健全財政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地方財政도 1963년부터健全財政運營을 기조로 삼게 되었던 까닭에 60년대에는 財源調達에 있어서 地方債의 活用은 거의 무시하여도 좋을 程度였다고 할 수 있다.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및 『地方財政年鑑』에 수록된 決算資料에 따라 會計別 地方債收入을 짐계하여 보면 〈表 13〉과 같다. 이에 따르면 60년대에 一般會計나 教育費特別會計의 地方債依存度는 거의 無視할 수 있는 程度에 불과하였다는 것과 其他特別會計事業의 地方債依存度가 20%를 상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962년도와 1963년도 其他特別會計歲入決算은 性質別 分析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地方債收入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1962년도나 1963년도에도 上水道事業과 住宅建設事業 그리고 土地區劃整理事業이 其他特別會計事業의 主軸을 이루고 있었던 事實로 미루어 보아⁽²⁶⁾ 其他特別會計事業의 일부가 起債에 의하여 총당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964년도에 其他特別會計歲入의 地方債收入依存度는 21.6%에 달하였으나 1965년도에는 23.7%, 1966년도에는 30.9%로 높아졌다. 그리하여 第1次計劃의 推進과 함께 其他特別事業이 확대됨에 따라 起債에 의한 財源調達規模도 늘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25) 財政部門의 通貨增發을 규제하기 위하여 1957년부터 운영되었으나 景氣浮揚을 위해 1961년에 중단되었다.

(26) 1962년도에 이들 세 가지 事業의 歲入合計는 其他特別會計歲入總額의 78.9%를 占하였고, 1963년도에도 그 比重은 72.3%를 차지하였다.

〈表 14〉 主要事業別 起債額(1968年度)

(單位：百萬원)

區 分	金額	區 分	金額
上水道事業	3,101	毘鄰地區開發	3,424
住宅建設	814	高速公路建設	400
區劃整理事業	828	小計	11,063
工業團地造成	2,496	起債總額에 대한比重	85.9(%)

資料：內務部, 『地方財政年鑑』, 1969.

한편 經濟開發이 본격화되었던 2次計劃期間 중에는 產業構造의近代化와 自立經濟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주요 政策課題의 동시적 해결에 주력하였던 까닭에 地方歲出規模도 實質的으로 크게 늘어 났으나⁽²⁷⁾ 地方財源調達에 있어서는 地方債에 대한 依存度도 크게 높아졌다. 1967년도 地方歲入(純計)의 地方債依存度는 4.15%(1966년도는 4.61%) 水準에 머물렀으나 1968년도에는 9.42%로 상승하였고 1971년도에도 5.68%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 같이 地方歲入의 地方債依存度가 높아졌던 것은 주로 其他特別會計의 地方債依存度가 높아졌던 데 기인하고 있다.⁽²⁸⁾ 1968년도에 其他特別會計는 그 所要財源의 42.7%를 地方債에 의하여 조달하였으나 주요 事業別 起債額은 〈表 14〉와 같다.

1971년도에도 其他特別會計의 起債依存度는 20.3%를 占하였으나 主要 起債事業에 上水道事業, 住宅事業, 土地區劃整理事業 이외에 地下鐵建設이나 漢江開發事業 등이 추가된다.

中央財政의硬直性을 타개하기 위하여 緊急措置가 취해졌던 1972년에는 一般會計의 起債依存度가 4.96%로 급증하였으나 公企業·其他特別會計 그리고 教育費特別會計의 起債額은 그 絶對額이나 그 상대적 比重이 모두 줄어들었다.⁽²⁹⁾ 그러나 一般會計의 起債額이 급증하고 公企業·其他特別會計 起債額의 減少幅이 근소하였기 때문에 地方財政 全體로 보면 起債額의 合計는 1971년도 대비 약 29억원이 늘어난 205억원 규모가 되어 地方歲入純計에 대한 比重은 5.76%가 되었다.

한편 1973년의 1次 石油活動과 그 후의 物價의 急騰에 대처하기 위하여 財政金融의 緊縮이 불가피하게 되자 地方財政의 起債도 억제되어 1977년도에 이르기까지 地方財政의 起債依存度는 감소되는 傾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4次計劃의 推進과 함께 社會開發의 計劃目

(27) 地方歲出純計는 對 GNP比率로 1966년 6.4%에서 1971년에는 9.0%로 높아졌다. 同期間 중 中央財政의 實質規模(對地方移轉分 除外)는 18.8%에서 16.6%로 떨어졌다.

(28) 1971年 이전 年度의 教育費特別會計의 起債는 매우 근소하였고 1970년도에도 歲入純計에 대한 比重은 0.95%에 지나지 않았다.

(29) 1972년도 一般會計 起債額은 前年比 2倍가 넘는 9,019百萬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公企業·其他特別會計의 起債額은 9,310百萬원으로 前年比 4.2%가 감소하였다. 教育費特別會計의 起債額은 2,137百萬원으로서 40.4%가 감소하였다.

標로 설정되고, 새마을事業의 확대와 生活環境改善 등이 주요 政策課題로 등장하게 되자 1978년도부터 地方財政의 起債依存度는 높아지게 되었다.⁽³⁰⁾

1979년도 會計別 地方債依存度를 보면 一般會計의 起債規模나 그 比重이 크게 擴大되고 있으나 이는 各道가 建設事業費(一般會計 所管)로 충당하기 위한 起債額이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다. 또 公企業・其他特別會計의 起債規模도 前年比 50%의 純增을 보였으나 이를 主要事業別로 보면 地下鐵事業이 337억원(39.5%), 上水道事業이 230억원(27.0%), 國民住宅事業이 210억원(25%)을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地方財政의 起債額이 늘어남에 따라 地方歲出에서 占하는 地方債費(元利金償還負擔)도 늘어났으나 地方歲出(純計)에 대한 比重은 60년대에 2%를 상회하지 않았고, 70년대에 이르러 1972년도에 5%臺로 높아졌으나 그 후 1978년도에 이르기까지 그 比重이 계속 低下되었다(1978년도 1.93%). 그러나 1979년도에는 一般會計의 地方債費가 크게 늘어나 地方財政 全體로 보면 地方歲出(純計)에서 地方債費는 3.96%를 占하였다.

이상과 같이 60~70년대를 통하여 地方財政의 規模가 實質的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하면 地方財政에 있어서 地方債活用度는 매우 낮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는 60~70년대의 開發過程을 통하여 物價不安의 制約下에 地方財政運營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健全財政運營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VI. 地方財政制度의 改編과 政策課題

1. 地方財政의 成長과 制度改編

60~70년대에 地方財政은 그 規模에 있어서나 機能, 制度 및 그 運營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하였다. 地方財政의 규모는 歲出純計로 볼 때 國民總生產에 대한 比率로 표시하여 1971년의 5.7%水準에서 1969년에는 9%로 높아졌고, 70년대에는 財源制約 때문에 그 水準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7~8%를 前後하는 水準에 머물렀다. 또 地方歲出을 기능별로 보면 새마을事業, 治水, 道路・橋梁, 都市土木, 工團造成, 災害對策, 觀光運輸 등 一般會計와 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의 公益事業에 대한 財源配分이 크게 늘어나 經濟發展의 기반이 되는 社會間接資本의 형성과 地域經濟의 발전에 대한 地方財政의 기여도가 매년 높아졌다.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출범한 1962년도만 하더라도 地方歲出(純計)에서 占

(30) 1978년도 會計別 起債依存度는 一般會計가 1.57%, 公企業 및 其他特別會計가 14%, 教育費特別會計가 0.5%(이상 각 歲入純計에 대한 比重)에 달하였고, 地方財政 全體로서는 起債依存度가 3.57%가 된다.

하는 公益事業費의 比重은 18%에 지나지 않았으나 第2次 5個年計劃의 最終年度인 1971년도에는 32%水準으로 높아졌고, 그 후에도 그 水準을 前後하는 地方支出類型이 유지되었다.

한편 地方財政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던 것이나 經濟成長에 대한 地方支出의 기여도가 높아졌던 基底에는 地方稅의 課稅水準이 높아졌던 것과 地方에 대한 國庫財源의 移轉規模가 커졌던 데 연유하고 있다. 1961년말 地方稅制改革으로 현행 地方稅制의 骨格이 마련된 후 60년대에는 7回, 70년대에는 7회에 걸쳐 실시된 크고 작은 地方稅法의 改正으로 地方稅制는 그 財源調達機能이나 公平한 負擔配分面에서 크게 改善되었다.

地方稅負擔率이 1961년도의 0.8%水準에서 1969년도에는 1.2%, 1979년도에는 1.9%臺로 높아졌던 것이 地方稅制의 財源調達機能이 확대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地方稅制의 補完내지 改善⁽³¹⁾은 地方稅의 負擔을 보다 公平하게 配分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財產稅의 課稅方法을 賦課指數기준에서 時價標準으로 전환한 것(1968년 실시), 農地稅의 免稅點制度를 基礎控除制度로 전환시킨 것(1970년 시행), 住民稅, 特히所得割의 신설(1973년 4월 시행), 第1期分(夏穀) 甲類農地稅의 폐지(上同), 奢侈性財產取得과 高級遊興場에 대한 重課稅(1974년 1.14措置와 그 地方稅制에의 反映, 1975년 시행), 甲類農地稅를 累進稅로 전환(1975년 시행), 空閑地에 대한 財產稅 課稅(上同), 市·郡附加稅制度의 폐지(1977년 시행), 事業所稅의 신설(上同), 空閑地 및 非業務用土地에 대한 保有期間別 財產稅差等課稅制度의 도입(1979년 시행) 등이 그러한 것이다.

60~70년대에 地方財政調整制度도 크게 개선되었다. 50년대 말기의 地方財政調整制度는 地方財政調整交付金法(1958년 制定)에 따라 營業稅·遊興飲食稅·入場稅·電氣가스稅額의 40%(以上 第1號 財源)와 第1種土地收得稅額의 8.8%, 第2種土地收得稅額의 50%(以上 第2號 財源)를 財源으로 하여 總基準財政收入額이 總基準需要額에 미달하는 不足額을 普通交付稅로서 보전하도록 하였다⁽³²⁾. 그러나 1961년말에는 새로 地方交付稅法를 제정(1962년 시행)하여 普通交付稅의 財源을 營業稅·入場稅·電氣까스稅額의 40%(第1號 財源)와 酒稅 중 潤酒·藥酒稅額의 85%(第2號 財源)로 정하고 特別交付稅의 財源은 第1號 財源의 10%로 法定化하였다. 그 후 1963년도에는 第1號 財源 중 入場稅가 삭제되고, 第2號 財源의 交付率이 43%로 下向調整(1964년 시행)되었으나 1965년도에는 第1號 財源에 酒稅(潤酒·藥酒稅 제외)가 추가되고 交付率도 50%로 上向調整되었다. 이어 1968년도에는 普通交

(31) 内務部,『地方稅政年鑑』, 1983.

(32) 災害, 地方自治團體의 廳舍 및 公共設施의 신설, 복구, 財政收入의 감소 등 특별한 財政需要가 있을 때 交付하는 特別交付稅는 普通交付稅總額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團體別 交付率을 별도로 정하였다.

付稅의 交付財源을 內國稅總額의 16%(特別交付稅는 普通交付稅額의 10%)로 정하였다(1969년 시행). 이로써 地方交付稅總額은 內國稅總額의 17.6%로 되었으며 1972년 「8.3措置」로 法定交付率制가 그 效力を 停止당할 때까지 交付財源을 安定的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60년대에 地方教育財政制度도 크게 개편되었다. 50년대 말에는 義務教育財政의 調整 만이 이루어졌으나 當時 義務教育財政은 國庫가 부담하는 教員俸給財源과 教育稅(國稅인 教育稅⁽³³⁾와 地方教育稅), 土地收得稅와 國稅教育稅 및 入場稅의 一定率로 정하여 之 還付金 그리고 教育區에 속하는 收入으로 총당되었다. 또한 基準財政收入額⁽³⁴⁾을 넘는 基準需要額, 즉 財源不足額은 義務教育財政交付金法(1958년 12월 制定)에 의거하여 國庫一般財源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60년대에 이르러 義務教育財政交付金의 財源을 法定化⁽³⁵⁾하는 한편 義務教育費의 財源만이 아니라 地方教育行政運營에 필요한 財源을 교부하기 위하여 地方教育交付稅法이 制定되었다(1963년 12월). 地方教育交付稅 중 普通交付稅의 財源은 入場稅額의 40%와 酒稅 중 潤酒·藥酒稅額의 42%로 정하고, 特別交付稅는 普通交付稅의 10%로 정하여졌다.⁽³⁶⁾ 이로써 地方教育財政의 調整은 義務教育財政交付金과 地方交付稅에 의하여 二元化되었으나 70년대에 이르러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의 制定(1971년 12월)으로 一元化되었다. 이에 앞서 1968년 7월에는 地方交付稅의 財源을 內國稅總額에 「링크」시키게 된 것과 步調를 같이 하여 義務教育財政交付金 중 普通交付金의 財源을 內國稅總額의 10.5%로, 地方教育財政交付金의 財源을 內國稅總額의 1.3%로 각각 改正하였다. 이 交付率은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에 그대로 반영되어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중 普通交付金의 財源은 (1) 國民學校教員의 俸給金額, (2) 公立의 各級學校教員俸給 半額(서울 除外), (3) 內國稅總額의 11.8%로 정하여졌다. 그리하여 特別交付金(普通交付金 第3號 金額의 10%)을 합하면 內國稅收入의 12.98%에 상당하는 財源이 地方教育財政交付金에 義務的으로 充當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2년 「8.3措置」로 法定交付率制度의 效力이 停止되자 地方教育財政도 安定的인 財源確保가 어렵게 되었다.

2. 政策課題

60~70년대 高度成長期에 이룩한 地方財政의 成長과 地方財政制度의 改善에도 불구하고 地方財政의 運營面에서 보면 行財政의 效率화와 公共意思決定의 合理化를 위하여 해결되어

(33) 國稅教育稅의 30%는 還付되고 그 70%는 財政不足額에 대한 補助金에 총당되었다.

(34) 地方教育稅收入의 70%, 土地收得稅·教育稅(國稅教育稅의 30%)·入場稅의 還付金, 기타 教育區收入으로 산정하였다.

(35) 1962년 4월에 義務教育財政交付金의 財源을 所得稅額의 42%로 法定하였다.

(36) 1964년 말에는 還付金을 交付金으로 代替하기 위하여 交付財源을 확충하였다. 普通交付金의 財源을 所得稅額의 50%와 入場稅總額의 50%로 삼았고, 特別交付金의 交付率은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1986년에는 所得稅率의 引上에 따라 普通交付金의 交付率을 下向調整하였다.

야 할 크고 작은 많은 政策課題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중반에 제기되었던 地方財政의 課題⁽³⁷⁾는 첫째로 地方財源의 확충과 財政自立度의 提高, 둘째로 國庫補助金의 整理(一般財源化), 세째로 公企業收入을 포함하는 稅外收入의 증대로 요약되었다. 한편 70년대초에 제기된 地方財政의 課題는 첫째로 財政收支上의 經常赤字를 축소하기 위한 自體歲入의 증대와 地方行政機構의 合理的 運營, 둘째로 中央豫算과 地方豫算의 同時的 編成과 綜合的 編成, 세째로 地方稅源의 개발을 위한 財產稅의 課稅對象擴大와 法定外 普通稅의 신설 등 地方稅制의 補完, 네째로 地方交付稅財源의 效率化, 다섯째로 國庫補助의 效率化, 여섯째로 特別會計事業의 정리, 일곱째로 廣域的 自治團體의 財政調整機能 확대, 여덟째로 首都 서울의 建設事業에 대한 國庫補助, 끝으로 地方教育財政과 地方一般財政의 統合運營으로 요약되고 있다.⁽³⁸⁾

더우기 1972년 「8.3措置」로 地方財政交付金의 法定交付率이 그 機能을 정지하게 되자 地方交付稅의 交付率은 內國稅總額(決算)의 10.7% (1977년), 地方教育財政交付率은 8.62% (1978년도)에까지 떨어지게 되자 地方財源의 安定的 確保를 위한 문제가 심각한 課題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地方稅의 性格을 갖는 國稅의 地方稅移讓問題나 地方讓與稅의 도입 그리고 教育稅의 新設方案⁽³⁹⁾ 등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地方稅制의 非彈力性을 해소내지 완화시키기 위한 地方稅制의 改編이나 國庫補助에 따른 地方費負擔制度의改善, 地方豫算制度의 改編과 地方公企業의 經營管理改善, 地方債運營制度의 개선 등 政策課題도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은 政策課題는 모두 80년대로 그 解결이 미루어 질 수 밖에 없었으나⁽⁴⁰⁾ 보다 기본적인 政策課題는 地方財政의 成長이 國民負擔내지 住民負擔의 증가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다는 點에서 地方自治團體와 住民의 關係, 地方稅負擔과 地方公共서비스의 便益 간의 關係 그리고 地方行財政에 관한 公共意思決定과 住民간의 關係를 定立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37) 內務部, 『地方財政의 現況과 展望(1964~1965)』, pp. 44-5.

(38) 企劃調整室, 『審查分析報告書』, 1970.

(39) 韓國教育開發院, 『敎育發展의 展望과 課題』, 1978; 大韓敎育聯合會, 『敎育稅新設方案』, 1979. 8.

(40) 1982년 4월 「8.3措置」의 해제로 地方交付稅의 交付率은 內國稅總額의 13.27% (총전 17.6%)로 확원되고 地方敎育交付金의 交付率도 內國稅總額의 11.8% (총전 12.98%)로 부활되었다. 또 1982년도에는 敎育稅가 신설되었다.

〈附表 1〉 會計別 地方歲出規模(純計)(1962~79年) (單位 : 10억 원, %)

	合計		一般會計		公企業·其他特別會計		教育費特別會計	
	金額	對比 GNP率	金額	對比 GNP率	金額	對比 GNP率	金額	對比 GNP率
1 9 6 2	24.06	6.77	9.81	2.76	2.35	0.67	11.90	3.35
1 9 6 3	28.08	5.59	13.17	2.62	2.71	0.54	12.20	2.43
1 9 6 4	32.13	4.49	15.69	2.19	3.08	0.43	13.37	1.87
1 9 6 5	41.76	5.19	20.59	2.56	4.86	0.61	16.31	2.03
1 9 6 6	66.36	6.40	32.33	3.12	8.09	0.78	25.94	2.51
1 9 6 7	86.71	6.77	41.24	3.22	11.84	0.93	33.64	2.63
1 9 6 8	134.20	8.12	57.42	3.48	32.32	1.96	44.46	2.69
1 9 6 9	190.50	8.84	91.21	4.24	39.79	1.85	59.50	2.76
1 9 7 0	237.49	8.68	114.20	4.18	42.27	1.55	81.02	2.96
1 9 7 1	304.15	9.01	146.82	4.35	49.55	1.47	107.78	3.19
1 9 7 2	345.06	8.31	159.91	3.85	59.59	1.44	125.56	3.02
1 9 7 3	394.41	7.33	186.12	3.46	74.70	1.39	133.59	2.49
1 9 7 4	517.06	6.90	245.38	3.27	101.56	1.36	170.12	2.27
1 9 7 5	740.54	7.34	364.24	3.61	135.23	1.34	241.07	2.39
1 9 7 6	999.31	7.20	451.65	3.26	167.59	1.21	380.06	2.74
1 9 7 7	1,382.46	7.63	652.52	3.61	232.17	1.29	497.77	2.75
1 9 7 8	1,915.48	7.91	898.08	3.71	376.07	1.56	641.33	2.65
1 9 7 9	2,749.38	8.80	1,337.81	4.29	546.63	1.75	864.93	2.77

註 : (1) 1962年은 内務部,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1962년에 수록된 統計資料에 의거하여 算出.

(2) 1963~72년은 内務部, 『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 『地方財政年鑑』各年度에 수록된 數值와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3~74年各年度版에 수록된 地方自治團體歲出狀況, 地方政府豫算收支 및 補填財源에 관한 統計引用.

(3) 1973~79년은 内務部, 『地方財政年鑑』各年度에 수록된 一般會計 및 公企業·其他特別會計 決算資料와 地方教育費特別會計決算資料, 文教部, 『文教統計年報』各年度에 수록된 地方教育費決算資料에 의거하여 算出.

〈附表 2〉 中央과 地方 간의 實質的 財源分配(歲出純計) (單位 : 10억 원)

	中央財政 (1)	地方自治團體 에 대한 移轉 (2)	中央財政規模 (調整值) (1)-(2)=(3)	地方財政規模 (4)	總財政規模 (3)+(4)=(5)	總財政의 對比 GNP比率 (%)	地方財政比重 (4)/(5) (%)
1962	119.9	13.8	106.1	24.1	130.2	36.6	18.5
1963	111.0	15.3	95.7	28.1	123.8	24.6	22.7
1964	120.7	16.4	114.3	32.1	146.4	20.4	21.9
1965	154.1	21.1	133.0	41.8	174.8	21.7	23.9
1966	231.0	35.6	195.4	66.4	261.8	25.2	25.4
1967	291.3	52.5	238.8	86.7	325.5	25.4	26.6
1968	403.4	76.1	327.3	134.0	461.3	27.9	29.1
1969	579.7	108.3	471.4	190.5	661.9	30.7	28.8
1970	599.6	141.9	457.7	237.5	695.2	25.4	34.2
1971	735.8	176.2	559.6	304.2	863.8	25.6	35.2
1972	966.4	199.3	767.1	345.1	1,112.2	26.8	31.0
1973	960.2	204.6	755.6	394.4	1,150.0	21.4	34.3
1974	1,428.3	235.6	1,192.7	517.0	1,709.7	22.8	30.2
1975	2,123.6	381.9	1,741.7	740.5	2,482.2	24.6	29.8
1976	2,895.2	530.6	2,364.6	999.3	3,363.9	24.2	29.7
1977	3,717.8	676.3	3,041.5	1,382.5	4,424.0	24.4	31.3
1978	4,755.3	872.6	3,882.7	1,915.5	5,798.2	24.0	33.0
1979	6,466.5	1,286.7	5,179.8	2,749.4	7,929.2	25.4	34.7

註 : 〈附表 1〉 參照.

〈附表 2-1〉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庫財源의 移轉 (單位 : 10억 원)

	總 計	一般會計 及 特別會計	(地方交 付 稅)	(補 助 金)	教 育 費 特別會計	(教育交 付 金)	(補 助 金)	教育交付稅
1 9 6 2	13.85	4.36	1.54	2.82	9.49	8.32	1.04	0.13
1 9 6 3	15.37	5.91	2.12	3.79	9.47	8.13	1.21	0.13
1 9 6 4	16.41	5.70	2.16	3.54	10.70	8.91	1.25	0.54
1 9 6 5	21.13	8.09	2.83	5.26	13.04	10.41	2.05	0.58
1 9 6 6	35.61	13.36	8.32	5.04	22.25	19.77	1.58	0.90
1 9 6 7	52.48	24.36	15.76	8.59	28.13	25.03	2.11	1.00
1 9 6 8	76.11	36.97	25.07	11.90	39.15	33.96	3.02	2.17
1 9 6 9	108.30	56.86	36.94	19.92	51.45	44.85	3.60	3.00
1 9 7 0	141.89	74.54	51.13	23.41	67.35	58.45	4.79	4.12
1 9 7 1	176.24	91.62	70.01	21.61	84.63	72.69	6.65	5.30
1 9 7 2	199.34	98.94	67.26	31.68	100.40	92.91	7.49	—
1 9 7 3	204.65	105.86	71.57	34.29	98.79	97.43	1.36	—
1 9 7 4	235.55	112.51	81.46	31.05	123.04	122.00	1.04	—
1 9 7 5	381.92	199.98	117.75	82.23	181.94	180.73	1.22	—
1 9 7 6	530.55	240.24	151.49	88.75	290.31	288.82	1.50	—
1 9 7 7	676.32	287.50	183.41	104.09	388.83	383.15	5.68	—
1 9 7 8	872.56	381.48	246.91	134.58	491.08	481.22	9.86	—
1 9 7 9	1,286.69	595.48	336.31	259.17	691.21	682.86	8.35	—

註：〈附表 1〉 參照。

〈附表 3〉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간의 實質財源分配(歳出純計) (單位 : 10억 원)

	總 財 政 規 模		(中 央 政 府)		(地 方)		地方의 상대적 比重(%)
	金 領	對 GNP 比率(%)	金 領	對 GNP 比率(%)	金 領	對 GNP 比率(%)	
1 9 6 2	130.2	36.6	106.1	29.8	24.1	6.8	18.5
1 9 6 3	123.8	24.6	95.7	19.0	28.1	5.6	22.7
1 9 6 4	146.4	20.4	114.3	15.9	32.1	4.5	21.9
1 9 6 5	174.8	21.7	133.0	16.5	41.8	5.2	23.9
1 9 6 6	261.8	25.2	195.4	18.8	66.4	6.4	25.4
1 9 6 7	325.5	25.4	238.8	18.6	86.7	6.8	26.6
1 9 6 8	461.3	27.9	327.3	19.8	134.0	8.1	29.1
1 9 6 9	661.9	30.7	471.4	21.9	190.5	8.8	28.8
1 9 7 0	695.2	25.4	457.7	16.7	237.5	8.7	34.2
1 9 7 1	863.8	25.6	559.6	16.6	304.2	9.0	35.2
1 9 7 2	1,112.2	26.8	767.1	18.5	345.1	8.3	31.0
1 9 7 3	1,149.5	21.4	755.1	14.0	394.4	7.3	34.3
1 9 7 4	1,709.7	22.8	1,192.7	15.9	517.0	6.9	30.2
1 9 7 5	2,482.2	24.6	1,741.7	17.3	740.5	7.3	29.8
1 9 7 6	3,363.9	24.2	2,364.6	17.0	999.3	7.2	29.7
1 9 7 7	4,424.0	24.4	3,041.5	16.8	1,382.5	7.6	31.3
1 9 7 8	5,798.2	23.9	3,882.7	16.0	1,915.5	7.9	33.0
1 9 7 9	7,929.2	25.4	5,179.8	16.6	2,749.4	8.8	34.7

資料：〈附表 1〉 參照。

〈附表 4〉 財政規模의 推移

(單位 : 10억 원)

	財政規模		(中央政府)		(地方)	
	金額	對 GNP 比率(%)	金額	對 GNP 比率(%)	金額	對 GNP 比率(%)
1 9 6 7	291.3	22.7
1 9 6 8	460.0	27.8	403.4	24.4	56.6	3.4
1 9 6 9	662.9	30.8	579.6	26.9	88.3	4.1
1 9 7 0	696.8	25.5	599.0	21.9	97.7	3.6
1 9 7 1	860.3	25.5	735.8	21.8	124.5	3.7
1 9 7 2	1,112.2	26.8	966.4	23.3	145.8	3.5
1 9 7 3	1,146.7	21.3	960.2	17.9	186.4	3.5
1 9 7 4	1,707.8	22.8	1,428.3	19.0	279.6	3.7
1 9 7 5	2,480.1	24.6	2,123.6	21.0	356.5	3.5
1 9 7 6	3,362.6	24.2	2,895.2	20.9	467.3	3.4
1 9 7 7	4,424.5	24.4	3,717.8	20.5	706.7	3.9
1 9 7 8	6,057.8	25.0	4,755.3	19.6	1,302.5	5.4
1 9 7 9	8,240.1	26.4	6,466.5	20.7	1,773.6	5.7

資料：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1984。

〈附表 5-1〉 地方歲出總計와 純計(1978)

(單位 : 10억 원)

區 分	一般會計	公企業·其他 特別會計	教育費特別會計	合 計
歲 出 總 計	1,140.8	392.2	909.2	2,442.2
(△ 變 動 關 係)	242.7	16.2	268.0	526.9
轉 出 金	64.9	5.3	1.6	71.8
補 助 金	156.7	10.9	2.4	170.0
交 付 金	21.1	—	—	21.1
教 育 交 付 金	—	—	264.0	264.0
歲 出 純 計	898.1	376.0	641.2	1,915.5

資料：內務部，『地方財政年鑑』，1979。

〈附表 5-2〉 地方歲出總計와 純計(1979)

(單位 : 10억 원)

區 分	一般會計	公企業·其他 特別會計	教育費特別會計	合 計
歲 出 總 計	1,729.9	582.0	1,277.1	3,589.0
(△ 變 動 關 係)	392.2	35.3	412.2	839.7
轉 出 金	91.7	7.6	0.4	99.7
補 助 金	261.1	19.7	4.4	285.2
交 付 金	31.5	0.5	—	32.0
道에 대한 負擔金	7.3	0.7	—	8.0
自治團體를 통한 응자금	0.6	6.8	—	7.4
教 育 交 付 金	—	—	407.4	407.4
歲 出 純 計	1,337.8	546.6	864.9	2,749.4

資料：內務部，『地方財政年鑑』，1980。

〈附表 6〉 地方政府에 의한 總固定資本形成

		規 模 (10억 원)	地方歲出純計에 대한 比重 (%)	一般政府總固 定資本形成에 대한 比重 (%)	國內總固定資 本形成에 대 한 比重 (%)
1	9	6 0	3.46	23.8	71.3
1	9	6 2	5.87	24.4	61.0
1	9	6 3	5.58	19.9	57.7
1	9	6 5	10.64	25.5	74.2
1	9	6 7	24.49	28.3	69.2
1	9	6 8	45.98	34.3	64.3
1	9	6 9	73.48	38.6	56.8
1	9	7 1	110.50	36.3	73.5
1	9	7 2	86.90	25.2	54.9
1	9	7 3	85.90	21.8	52.3
1	9	7 5	218.20	29.5	61.0
1	9	7 7	391.20	28.3	61.1
1	9	7 9	837.20	30.5	63.9

資料：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各年度；『國民所得計定』，1984.

〈附表 7〉 團體別 地方稅收入의 比重(一般會計總計에 대한 比重) (單位：10억 원, %)

	特別市·道		市		郡 ⁽¹⁾		合 計 ⁽²⁾	
	稅 收	比 重	稅 收	比 重	稅 收	比 重	稅 收	比 重
1 9 6 0	1.44	13.9	0.39	22.6	0.30	13.1	2.12	15.6
1 9 6 2	2.14	29.4	0.66	30.7	2.42	57.0	5.21	44.2
1 9 6 5	5.64	37.1	0.96	29.2	4.80	47.8	11.35	48.7
1 9 6 8	12.56	30.9	2.26	21.7	4.54	17.9	19.36	29.2
1 9 7 1	27.96	29.1	4.92	19.7	6.93	11.6	39.81	25.4
1 9 7 3	48.93	25.6	11.19	20.5	14.01	15.3	74.13	34.2
1 9 7 5	101.42	27.0	23.97	23.5	33.40	19.6	158.79	36.9
1 9 7 7	240.32	47.1	37.27	27.5	58.98	18.8	336.57	41.2
1 9 7 9	424.42	39.6	78.52	28.1	96.25	17.3	599.20	37.7

資料：內務部，『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地方財政年鑑』，各年度。

註：(1) 邑·面의 合計。

(2) 1960년除外，歲入純計에 대한 比重。

〈附表 8〉 會計別 國庫財源依存度(歲入純計에 대한 비중)

(單位 : %)

	一 般 會 計			公 企 業 其 他 特 別 會 計	教 育 費 特 別 會 計		總 計
		交 付 稅	補 助 金		交 付 金		
1 9 6 2	36.9	13.0	23.9	•	81.7	72.6	53.6
1 9 6 3	31.7	12.0	19.7	•	80.2	66.7	47.3
1 9 6 5	55.8	37.9	18.0	•	85.6	74.3	53.6
1 9 6 8	58.4	44.6	13.8	•	80.4	69.1	56.9
1 9 7 1	48.3	33.0	15.3	1.4	73.1	72.1	48.2
1 9 7 2	46.5	27.4	1.9	•	74.8	74.3	47.6
1 9 7 3	35.2	22.5	12.7	0.2	76.3	75.2	43.8
1 9 7 7	37.1	21.1	15.9	1.0	76.2	75.3	41.8

資料：內務部，『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地方財政年鑑』，各年度。

註：(1) 補助金에 交付金 合計。

〈附表 9〉 地方債費의 比重(歲出純計에 대한 비중)

(單位 : 百萬원, %)

	合 計		一 般 會 計		公 企 業 · 其 他 特 別 會 計		教 育 費 特 別 會 計	
	金 額	比重(%)	金 額	比重(%)	金 額	比重(%)	金 額	比重(%)
1 9 6 2	670	6.83	N.A.	..	16	0.68
1 9 6 3	118	0.90	N.A.	..	3	•
1 9 6 5	378	0.91	98	0.48	268	5.51	12	•
1 9 6 8	2,663	1.98	434	0.76	2,217	6.86	12	•
1 9 7 1	8,314	2.73	2,743	1.87	4,389	8.86	1,182	1.10
1 9 7 2	18,159	5.27	5,268	3.30	9,086	15.25	3,805	3.03
1 9 7 3	13,820	3.50	12,846	6.90	9,766	13.07	2,208	1.65
1 9 7 5	24,189	3.27	7,762	2.13	14,203	10.50	2,224	0.92
1 9 7 7	29,480	2.13	4,309	0.66	20,681	8.91	4,490	0.90
1 9 7 9	108,974	3.96	75,794	5.67	29,753	5.44	3,427	0.40

資料：內務部，『地方自治團體決算概要』，『地方財政年鑑』，各年度。